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67
----------	------

2024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9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이에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 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출자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노후 열수송관 교체 200억원(2025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연도별 추진(예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진단구간(km)	265	20	174	71	-	-
교체구간(km)	41.6	3.4	3	7.3	6.1	21.8
출자금(억원)	659	59	200	140	200	60
집행액(억원)	394	59	109	226(예정)		

□ 필요성

- 집단에너지 공급 및 노후 열수송관 교체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서울에너지공사의 핵심 수행사업임.
- 87~'05년 매설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열수송관에 대해 교체 등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
 - '25년 노후 열수송관 6.1km 교체 등 '26년까지 41.6km 교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출자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1조원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25년 200억원)으로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연도별 추진(예정) 현황〉

구 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 고
진단구간(km)	265	20	174	71	-	-	예산금액, 공사현장 여건, 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교체구간(km)	41.6	3.4	3	7.3	6.1	21.8	
출자금(억원)	659	59	200	140	200	60	
집행액(억원)	394	59	109	226(예정)			

※ ('24년 교체구간) '23년 선로 교체 설계 절차 등 기간 소요로 인해 사고이월(86억원)하여 2.26km 교체하였으며, '24년 출자금(140억원)으로 5.05km를 교체 중에 있음.

〈2025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추진(예정) 현황〉

구 분	대상지역	관경 (mm)	공사내용	교체길이 (m)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공사기간)
합 계				6,166	20,000	-
서남권	양천·강서·구로	600~32	지점보수	576	1,200	25. 1.~12.
	방화, 가양 주배관	600~450	배관교체	1,612	5,400	25. 3.~11.
	소 계	600~32	-	2,188	6,600	-
동북권	노원·중랑·도봉	700~25	지점보수	126	1,200	25. 1.~12.
	중랑천 복단 대체	700~500	배관교체	3,600	10,900	25. 3.~11.
	하천 횡단(4-1L)	500	배관교체	252	1,300	25.10.~12.
	소 계	700~25	-	3,978	13,400	-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 등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2019년(추경)부터 2024년까지 총 2,425억원(현금 1,976억원, 현물 449억원) 규모의 출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으며, 출자계획 변경으로 실제 5,754억원(현금 1,720억원, 현물 4,034억원²⁾)이 출자되었음.

〈서울에너지공사 총 출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1,720	186	660	140	215	379	140
서남 2단계	721	86	160	140	156	179	-
태양광 발전사업	174	100	74	-	-	-	-
노후 열수송관	399	-	-	-	59	200	140
공사 채무 상환	426	-	426	-	-	-	-

- 출자 대상 사업 중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은 「서울시 기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안)」(‘22.4.)의 하나로 열수송관 총연장 438km(219km×2열) 중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 265km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 중 C등급 및 이상징후 발생 노후배관 41.6km 구간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하여 진단·이설·교체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출자계획을 재수립한 바 있음.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설치 현황〉

(단위: km, 1열)

구 분	합 계	'04년 이전	'05년~'13년	'14년~'23년
합 계	438.8(100%)	262.0(59.7%)	75.8(17.3%)	101.0(23.0%)
서남권	253.2	129.0	52.2	72.0
동북권	185.6	133.0	23.6	29.0

※ 총 노후 열수송관은 265km, 이 중 A등급 19.0km B등급 139.8km C등급 35.2km

A등급: 문제없음 / B등급: 경미한 결함·모니터링 필요

C등급: 신속 보수·보강, 모니터링 필요

2)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시 시설을(목동, 노원, 마곡(1단계)) 공사로 이관하여 현물출자 급증

- 2025년에는 6.1km 구간의 교체를 위해 2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 서남권(목동 등)과 동북권역(노원 등) 관로 교체(이설)에 176억원, 지점 보수(교체)에 2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2025년 출자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출자계획을 보면 2026년 21.8km 교체에 60억원 출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7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연간 교체 가능 물량 및 소요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출자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현황 및 계획〉

구 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교체구간(km)	41.6	3.4	3	7.3	6.1	21.8
출자금(억원)	659	59	200	140	200	60

-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열수송관 총연장은 438km(219km×2열)로 이 중 노후 열수송관은 265km이며,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상의(B등급 일부 포함) 열수송관 41.6km는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노후 열수송관 223.4km는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임.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하여 노후 열수송관 전반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2067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나. 안정적인 열공급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 :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 20,000백만원
 - 노후 열수송관 교체 : 20,000백만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659	59	200	140	200	60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659	59	200	140	200	60

나. 출자 필요성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25년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
 - '25년 노후 열수송관 6.1km 교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③ 항 생략

나. 예산조치 : '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보영(☎ 2133-3554)